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한 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으로 요구되는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30%로 완화(안 제7조)
- 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 (안 제3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만,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의 수출비중은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매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를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수산물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관세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입주 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7조(입주자격) ① ----- 다만,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 ⑨ (생략)

<신설>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의 수출비중은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 ⑨ (생략)

제32조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수산물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관세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는 위
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
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전 등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
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